

 <b>안산대학교</b>	<h2 style="margin: 0;">산학협력단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4-1-1
		제정일자	2003.03.01.
		개정일자	2024.10.01.
		개정차수	6차
		소관부서	산학협력단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산학협력사업과 국고지원사업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 효율성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산학협력사업 및 국고지원사업의 통할
2. 산학협력사업 및 국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산학협력사업 및 국고지원사업 기관의 행정·재정 지원
4. 산학협력 체결 및 이행,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,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관리
5.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
6. 연구소, 센터 등 평가 및 지원
7. 학교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8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### 제2장 조 직

제4조(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신설 2024.10.01.>

제5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은 제3조(사업)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<별표>의 조직을 둔다.

②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10.01.]

제6조(산학협력단 교직원)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 산학협력단 업무뿐 아니라 본 대학의 교육, 연구 그 밖의 사무를 겸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겸무하게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10.01.]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 삭제 <2024.10.01.>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전략기획처장, 창업보육센터장을 포함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 삭제 <2024.10.01.>

제10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 및 국고지원사업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주요사항
5. 교외연구비, 간접연구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연간 산학협력단 운영 결과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사항 <신설 2024.10.01.>
7.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<신설 2024.10.01.>

제11조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2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